



City of Downey

다우니시



미국 장애인법 “ADA” 공고

1970 년 미국 장애인법(“ADA”) 제 II 조의 요건에 의거하여, 다우니시에서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의 장애에 근거하여 유자격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용: 다우니시에서는 채용이나 고용의 실행에 있어서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ADA 제 I 조 하에서 연방 고용 평등 위원회가 공표한 모든 규정들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다우니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자격 장애인이 다우니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의 요청 시 제공합니다.

정책 및 절차의 수정: 다우니시에서는 장애인이 시의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활동을 향유하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보조동물과 함께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 금지된 다우니시 사무소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보조적 도움이나 서비스 또는 다우니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적어도 예정된 행사 시간보다 48 시간 이전에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 담당 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ADA 는 다우니시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일체의 조치를 시에서 취하거나 부당한 재정적 혹은 행정적 부담을 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우니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장애자가 사용할 수 없는데 대한 민원은 다음으로 해야 합니다:

ADA/Section 504 Coordinator

11111 Brookshire Avenue

Downey, CA 90241

ADACoordinator@downeyca.org

전화: (562) 299-6619 팩스: (562) 923-6388

캘리포니아 릴레이: 7-1-1

다우니시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나 휠체어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는 위치로부터 품목의 회수와 같은 보조적 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적절한 정책의 수정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특정 장애인 개인이나 장애인 단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는 ADA/Section 504 Coordinator 로부터 다른 포맷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